

 국토교통부		보 도 자 료		
		배포일시	2020. 8. 27.(목) 총 3매(본문 3)	
담당 부서	생활교통과	담 당 자	• 과장 오송천, 사무관 강준식, 주무관 최소영 • ☎ (044) 201-3797, 3814	
보 도 일 시		2020년 8월 28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8. 27(목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전기·수소차 전용주차구역 늘어난다.

- 하천변 둔치주차장 침수방지 안전시설 의무화,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 등 주차장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 -

- 노외주차장에 전기·수소차 등의 환경친화적 자동차(이하 환경친화차) 전용주차구역이 확대되고 하천변 둔치주차장에 침수예방 안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.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전기차 등 그린 뉴딜 산업을 지원하고, 폭우 등으로부터 자동차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「주차장법 시행령·시행규칙」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.
-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 전기차 등 그린 뉴딜 지원

❶ 환경친화차 전용주차구역 확대 (시행령 안 제4조, 시행규칙 안 제6조)

- 신설되는 노외주차장에는 전기·수소차 등 환경친화차 전용주차 구역을 총주차대수의 5% 이상 설치해야 하며, 기존 주차장도 개정 안 시행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설치하도록 한다.

② 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규제 완화 (시행규칙 안 제6조)

-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인 전기차 충전시설은 그간 주차장 면적의 20% 내에서 설치할 수 있었으나, 20%를 초과하더라도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한다.

③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지원 (시행규칙 안 제6조)

- 주차장 부대시설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종류에 해당시설을 포함한다.

2 물류시설 설치 등 지원

① 데이터센터의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 설정 (시행령 별표7)

- 데이터센터 설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간 별도의 설치기준이 없었던 데이터센터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400㎡당 1대로 설정한다.

② 첨단물류 집배송 시설 설치 지원 (시행규칙 안 제6조)

- 노외주차장에도 첨단물류 집배송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설치 가능한 부대시설의 종류에 포함한다.

③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주차 근거 마련 (시행규칙 안 제6조의2)

- 지역주민 전용으로 지정된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에는 다른 사람들과도 공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유주차 앱·플랫폼서비스 등의 공유주차사업 활성화를 도모한다.

③ 주차장 안전 강화

① 둔치주차장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(시행규칙 안 제5조)

- 상습적으로 침수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하천구역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침수 피해 방지 안전시설(통제·감시·대피 안내 시설)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, 기존에 설치된 주차장도 개정안 시행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설치하도록 한다.

② 주차장정보망에 안전정보 추가 관리 (시행규칙 안 제18조 신설)

- 주차장 안전강화(주차장법 시행 '20. 6. 25)에 따른 안전실태조사, 경사진 주차장, 400대 초과 대형주차장의 안전관리 정보 등을 주차장 정보망 관리대상정보에 추가한다.
- ☐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마련한 주차장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등을 거쳐 연내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.
- ☐ 국토교통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“주차장 시설에 친환경차량 주차구역 및 첨단물류 집배송시설을 설치토록 지원함으로써 그린 뉴딜 등 새로이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도움이 되도록 주차장 정책 개선에 힘써 나갈 것”이라 하면서,
- “앞으로도, 주차난 해소와 우리 국민들의 안전, 이용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
생화교통과 강준식 사무관(☎ 044-201-3814)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